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 약관과 다른 긴급조치 허용 〉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30호)

2025. 8. 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조치 명령 가능	2
2. 긴급상황 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가능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희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6. 27.

다. 회부연월일 : 2025. 6.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 발생 시, 국회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이 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해석함에 따라 긴급한 이용자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됨.

나아가 향후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명령 이행을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0, 제97조제8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조치 명령 가능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심보호서비스 등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0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u>제32조의20(침해사고 발생 시의 이용자 보호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피해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u>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u>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u>1.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사실을 통지할 것</u> <u>2.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해지 방법을 제공할 것</u> <u>③ (별도 검토)</u> <u>④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해지 방법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97조(벌칙) ----- ----- ----- -----. 1. ~ 7. (현행과 같음) <u>8.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u>
--	---

□ 검토의견

- SKT는 2025년 4월 22일 해킹사고와 관련해 공식 발표를 통해 ‘유심보호서비스’ 제공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서비스에는 비정상 인증 시도, 무단 기기 변경, 해외 로밍 차단 기능이 포함되었음. 또한, 2025년 4월 24일에는 알뜰폰(MVNO¹⁾) 고객까

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SKT 망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보호 조치를 제공하였음.

- 이러한 SKT의 조치는 동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SKT의 자체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최근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음.
- 동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침해사고 발생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알뜰폰 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는 이동통신망을 보유하지 않고 다른 이동통신사의 망을 임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부가서비스’에 한정할 경우 이용자 보호조치(제1항)을 포괄하지 못할 수 있어 부가서비스 외 보호조치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인 법무부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 처벌할지 여부 및 그 정도는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개정안은 긴급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대응력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나, 소관 부처의 부가서비스 외 보호조치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보임.

2. 긴급상황 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가능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의 이용자의 권익이 크게 위협을 받는 긴급상황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앞 부분에서 규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령 이행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의2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u>제32조의20(침해사고 발생 시의 이용자 보호조치)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u>

☐ 검토의견

- 최근 SKT 해킹사고 발생 시,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이용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해당 이동통신사에 이용자에게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2)에 따른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긴급한 이용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령(안 제32조의20 신설 부분 등) 이행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됨.

- SKT 해킹 사고 사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 등으로 SKT 이용자에게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나목2)3)에 따르

2)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조치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 상황에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용자 보호 조치와 금지행위 예외 조항의 비교>

구분	이용자 보호 조치	금지행위 예외
조항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피해확산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u>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u> 를 명할 수 있다.	○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u>특정 부가서비스</u>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이용자 보호 조치(안 제32조의20제1항)에서는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나, 금지행위 예외(안 제

는행위1) 이용자(명의를 도용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2조의20제3항)에서는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만을 규정하고 있어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금지행위 예외의 적용 범위를 이용자 보호 조치와 일치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따른 긴급한 이용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내용에 동의하며, 이동통신사업자는 명령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 시, 금지행위 해석에서 벗어나 적극적·구체적인 실행이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조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체계를 고려하여 침해 시 조치에 대한 금지행위 적용 배제 조항을 현행 금지행위 규정에 포함하고, 사이버 침해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종합적으로, 동 개정안의 긴급 상황 시 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령의 이행을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여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나, 소관

부처의 이용자 보호 조치와 금지행위 예외 규정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가서비스 외의 보호조치도 예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이라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